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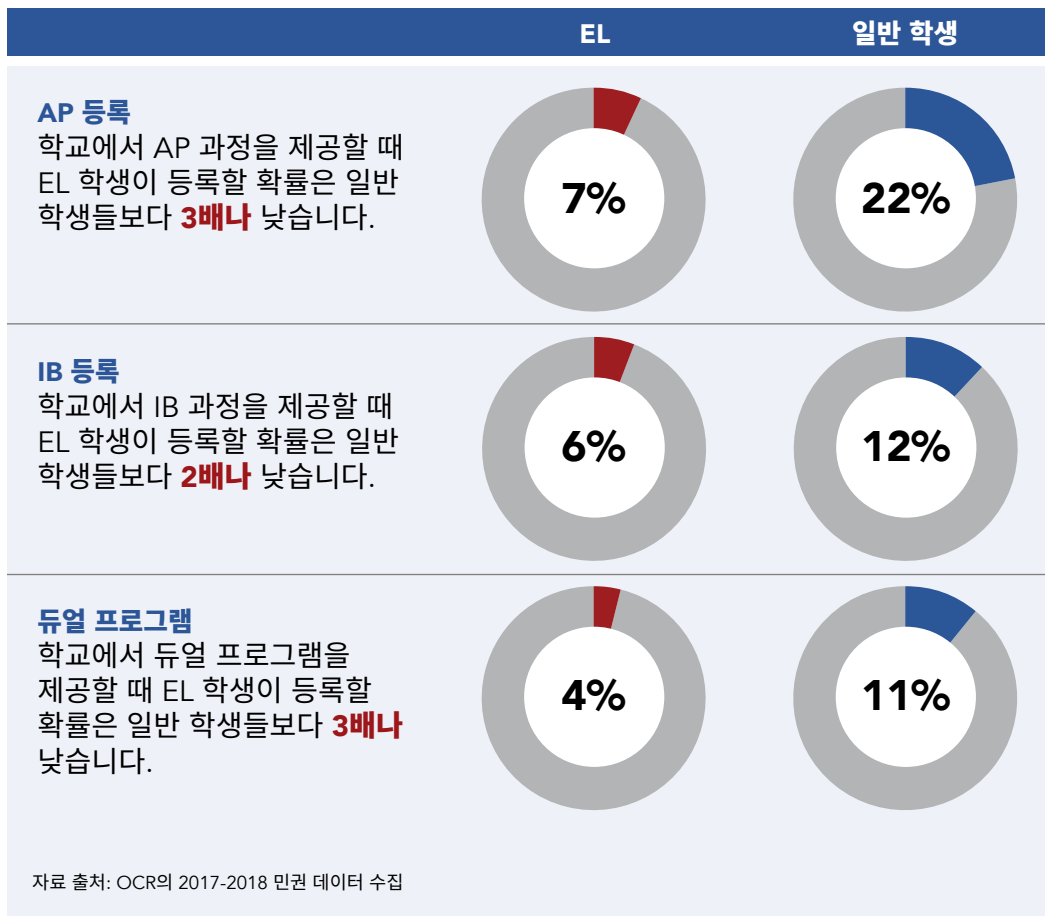
영어 학습자(EL)를 위한 상급 학습 과정 및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구 중에서는 특별 또는 상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AP(Advanced Placement), 영재 교육, 우등생,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직업 및 기술 교육, 대학 예비 경험, 진로, 듀얼 프로그램, 이중 학점, 동시 등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일반적으로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대학 진학, 학위 취득 및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민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¹ 가장 최근인 2017-2018 학년도에 EL

학생의 이러한 전문 또는 상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낮았습니다.

학교는 적절한 평가 및 시험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보장해야 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상급 또는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된 영어 능력을 이유로 EL 학생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EL 학생은 상급 또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적절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그림 1



미국 교육부(교육부), 민권 사무국(OCR)은 교육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타이틀 VI)을 집행합니다. *Lau v. Nichols*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가 타이틀 VI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자(EL)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OCR은 팬데믹으로 인해 2019-2020년 민권 데이터 수집(CRDC)을 연기했으며 올해 2020-2021년 CRDC의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VI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에 따른 관행의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²

1. 상급 또는 특수 프로그램에서 EL 학생을 철저히 제외시킴.
2. 참여하기 어렵도록 특정한 장벽 만들기(예: 유일한 AP 미적분 수업을 EL 수업과 같은 기간에 예약하기).
3. 고급 과정 또는 전문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고 EL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발 기준 사용(예: 학생이 AP 스페인어를 포함한 모든 AP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려면 GPA가 3.75여야 함).
4. EL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한 선정 기준을 사용.
5. EL 학생에게 상급 또는 전문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나 EL 학생은 언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EL 학생이 상급 또는 전문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언.
6. 비 EL 학생들에게만 상급 또는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7. EL 학생이 특수 또는 상급 프로그램에 입학할 때 교사 추천을 제외하거나 EL 수업 교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지 않음.

기타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³

- [학교 안내문\(Dear Colleague Letter\): EL 학생 및 제한적 영어 구사 학부모\(English Learner Students and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2015년 1월)
- [현황 자료: 영어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하기\(Ensuring English Learners Can Participate Meaningfully and Equally in Educational Programs\)](#) (2015년 1월)
- [현황 자료: 출신 국가 및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처\(Confronting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Immigration Status\)](#) (2021년 8월)

EL 학생을 위한 상급 또는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와 리소스는 영어 습득 담당실의 자료인 "EL 학생을 위한 고급 과정 및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례"를 <https://ncela.ed.gov/resources/oela-resources/brief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CR에 어떻게 불만 사항을 접수하나요?

교육구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L인 학생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www.ed.gov/ocr/complaintintro.html (영어로 불만 제기) 또는 www.ed.gov/ocr/docs/howto.html (영어 이외의 언어로 불만 제기)에서 OCR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정보는 OCR에 1-800-421-3481 (TDD) 1-800-877- 8339)번으로 연락하거나 ocr@ed.gov 를 방문하거나 www.ed.gov/ocr 을 방문하십시오.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EL 학생과 학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학교의 민권 의무에 관한 정보는 OCR의 영어 학습자를 위한 기회 균등 웹사이트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pro-students/issues/roi-issue03.html>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교육부 정보를 구두 통역 또는 문서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 언어 접근성 서비스나 자료를 요청하려면 언제든지 OCR@ed.gov 에 연락해 주십시오.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점자나 대형 활자체와 같은 대안적 형식으로 문서를 요청하려면 교육부에 202-260-0818번이나 ofe@ed.gov 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현황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며 법률 및 규제 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OCR의 모든 집행 결정은 각 개별 사례의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2. 42 U.S.C. § 2000d부터 d-7(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를 참조하고, 34 C.F.R. § 100.3(b)(1) 및 (2)(타이틀 VI에 따라 금지된 차별을 설명하고 특정 금지된 행위를 명시)를 참조하십시오.

3.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을 집행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1974년 평등 교육 기회법(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을 시행하여 주 교육 기관과 교육구가 영어 학습자 학생이 주 및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U.S.C. §§ 1701-1758.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 civilrights.justice.gov 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